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다중이용업주 등에게 영업장 방연마스크 비치의무 부과〉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92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2.
3. 회 부 일 : 2024. 10.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영업장에 소화설비, 피난설비 등 안전시설을 설치 및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등에서 드러났듯 5년간 화재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가 유독가스를 흡입해 큰 인명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순식간에 퍼지는 유독가스에 대해 방연마스크로 골든타임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실제로 방연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도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구조와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에 방연(防煙)마스크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갖추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다중이용업주 등에게 영업장 방연마스크 비치의무 부과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방연마스크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연마스크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제25조제1항제2호의4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9조의3(다중이용업소의 방연마스크)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는 방연(防煙)마스크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방연마스크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u>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	제25조(과태료) ① ----- -----

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 2의3. (생 략)	1. ~ 2의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의4. 제9조의3을 위반하여 방연</u> <u>마스크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u> <u>아니한 자</u>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소 중에서 영업 중에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를 말하는데¹⁾, 2024년 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에는 169,392개의 다중이용업소가 있음.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4.1.7.>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营业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②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현황>

(기준일: 24.1.1.)

계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	공유주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	산후조리원
	21	8	1,632	1,551	2,103	7,770	893	27,543	514
169,392	비디오소극장	복합영상물	학원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P C 방	복합유통업	노래연습장	권총사격장
	21	8	1,632	1,551	2,103	7,770	893	27,543	13

(자료: 소방청)

현행법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에게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포함한 안전시설등²⁾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도록 하여,

법률에서는 안전시설등을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4.1.7.>

2.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에 안전시설등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음.

※ 안전시설등은 이용자 개개인이 사용하도록 설치하는 물품이 아닌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초기 소화 및 인명대피가 가능토록 설치한 고정식 설비를 지칭함. 다만,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관계인 또는 사용자 중 일부가 다수인의 피난을 돕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구획된 실마다 1개 정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음(자료: 소방청).

거를 규정하고 안전시설등의 종류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예외적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과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제9조제1항) 다중이용업주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비상구 추락방지 장치를 갖추도록(제9조의2)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³⁾⁴⁾,

이는 해당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던 다중이용업소에도 소급해서 해당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음⁵⁾.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6.]

- 4)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과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은 법률 제9330호(2009. 1. 7, 시행)에서 처음 규정되었고,
다중이용업주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비상구 추락방지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은 법률 제15299호(2017.12.26. 시행)에 신설되었음.

- 5) 구체적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 고시원과 같이 그 구조가 건축 당시부터 매우 협소하고 화재 시 비상구, 창문 등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건축물의 경우 소방관들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작업에 제한을 초래하여 대형참사의 위험이 큼. 이에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자동식 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고시원 등 기존의 영업장까지 모두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해서 법률에 이 내용을 규정하였음.

비상구 추락방지장치 역시 지속적인 비상구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영업장도 모두 비상구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음.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영업장에 방연마스크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비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5년간 화재사고 인명피해 통계를 살펴보면, 연기·유독가스 흡입 및 이에 따른 화상을 원인으로 한 인명피해가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연기는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3~5배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화재 발생 시 연기 속에 포함된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된다는 점⁶⁾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에 방연마스크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여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사망자 피해를 줄이는 등 화재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6) 자료: 소방청

<최근 5년간 화재사고 인명피해* 통계>

구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12,074	2,515	2,283	2,130	2,669	2,477
화상	5,009	1,065	922	902	1,065	1,055
연기,유독가스흡입	3,719	785	673	640	843	778
연기,유독가스흡입및화상	1,361	257	320	237	293	254
기타	632	150	126	108	133	115
넘어지거나 미끄러짐	348	55	61	58	92	82
열상	327	74	52	56	76	69
미상	257	53	49	57	56	42
피난중뛰어내림	182	39	33	30	37	43
복합원인	180	30	34	29	53	34
건물붕괴	45	7	8	11	16	3
간헐	14	0	5	2	5	2

* 인명피해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한 수치임
(자료: 소방청)

다만, 개정안의 입법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먼저,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단시간 이용하는 27종의 영업장(음식점, 카페, PC방, 키즈카페 등)으로서 이용객의 규모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에 필요한 방연마스크의 수량 파악 및 비치 장소 선정 등이 어렵고,

방연마스크는 일반인의 경우 착용에 1분 이상 소요되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오히려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현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방연마스크는 존재하지 않아⁷⁾ 다중이용업소의 내부 피난통로 및 비상구를 통해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다음으로 개정안을 입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에 방연마스크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중이용업소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경우 2026년 17억 9,200만원, 2030년 19억 4,0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93억 2,800만원, 연평균 18억 6,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함.

7) 소방청은 현재 시중에서 주로 유통되는 방연마스크는 2종인데, 이 중 ① 한국표준협회에서 품목 지정한 KSM6766(표준번호) 여과식 간이호흡기구는 산업용 방연마스크로 포스겐 등 화재시 배출되는 다양한 유독가스에 사용이 곤란하고 산소가 17vol% 이하인 환경에서도 사용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고, ② 자급식 간이호흡기구는 화재시 모든 유독가스에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시간이 이동 대피시에는 15분(25ℓ/min 호흡기준), 구조 대기시에는 30분(10ℓ/min 호흡기준)으로 짧은 단점이 있다고 설명함.

<국회예산정책처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다중이용업소 방연마스크 구비 지원 (안 제9조의3 신설)	1,792	1,829	1,865	1,902	1,940	9,328	1,866

- 주: 1. 다중이용업소 방연마스크 구비 지원(안 제9조의3 신설)은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본 추계는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200㎡ 이하인 업소에 50개의 방연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지원대상 시설에 따라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따라서 동 개정안의 입법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가능한 예산의 확보 여부 및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자부담 비용 발생 시 이에 대한 관계자의 수용 가능성의 정도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기획재정부는 소방시설 설치에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51